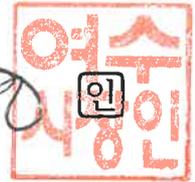


2023년 제13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23년 12월 29일

여 수 시 장 92571190



여수시 규칙 제835호

붙임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담배소매인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 가능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④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또한, 제3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소매인 지정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
-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항 중 “제10조제2항 본문·”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제16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3조 (소매인 지정기준) ① 법 제16조제3항 -----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p>	<p>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p>
<p>3.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p>	<p><삭 제></p>
<p>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p>	
<p>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p>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③ (생략)

<신설>

<신설>

② -----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 가능한 -----
-----.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또한, 제3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신 설>

제4조(소매인 지정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슈퍼

제4조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 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

제5조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 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생략)

<삭 제>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
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을 지정할 수 없다.

제5조 (생략)

<삭제>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